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1일 10시 23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(승인) 제도 안내(요약)	3

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(승인) 제도 안내(요약)

2024.03.07 조회수 86 담당부서 산단환경관리과 담당자 정용정 연락처 061-659-2793

○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구매·사용을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*에 대하여 안전기준 확인·신고(승인)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: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 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,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생활화학제품

(2024. 2. 19. 기준 14분류 43개 품목(초, 세정제, 세탁세제, 방향제 등))

○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제품을 유통하기 전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·승인 번호를 취득한 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 절차 붙임 3 제도안내서 참조.

○ 신고·승인기관




환경부(신고대상제품: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승인대상제품: 국립환경과학원),

○ 제도이행절차

안전기준 확인 [확인결과서] (유효기간 3년)	⇒	신고 [신고증명서]	⇒	제조·판매 [표시기준 준수]
지정 검사기관		한국환경산업기술원		제조 판매자

○ 관련 문의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(1800-0490 ⇒ 연결번호 1번)
-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(1800-4840, 1800-1253)
-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(070-5148-2950)
-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식누리집(<https://chemp.me.go.kr>)

첨부파일 전제(Zip)다운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안내서.pdf (25 hit/ 7.56 MB) ↓ 미리보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준수사항안내서.pdf (37 hit/ 6.21 MB) ↓ 미리보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홍보포스터(jpg).jpg (21 hit/ 746.0 KB) ↓ 미리보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이전글

2024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...

다음글

2024년 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전담인력 채..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